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2030년에 개최되는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위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2030년에 개최되는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위해 국내외 유치 활동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및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유치와 관련된 주요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2.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을 상대로 한 유치교섭 활동
3. 2030 세계박람회 유치 관련 국제박람회기구 일정 대응
4.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의 정책 조정·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필요한 자원 확보
6.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유치와 관련된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국무총리와 제3항 제4호의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국무조정실장
2. 대통령비서실의 관련 분야 수석 비서관
3. 부산광역시장
4. 그 밖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유치를 위해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시까지로 한다. 다만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경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공동으로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회의에 상정되는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상정된 안전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실무조정점검회의)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전의 검토와 정부지원 사항에 대한 실무협의 및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의 추진, 점검 및 조정 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국무조정실장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실무조정점검회의(이하 “점검회의”라 한다)를 개최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국무조정실장은 점검회의 개최 시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국무조정실, 대통령 비서실, 그 밖에 관계부처 및 기관에게 관계자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점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9조

제3항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단 단장이 된다.

제9조(2030 부산세계박람회유치지원단) ①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 2030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2030부산세계 박람회유치지원단(이하 “유치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유치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관한 정책과 사업의 기획·조정
2.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을 상대로 한 유치교섭 활동
3. 세계박람회 유치 관련 국제박람회기구 일정 대응
4.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대내외 홍보활동
5. 위원회 및 점검회의 운영 지원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③ 유치지원단 업무를 전담할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유치지원단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지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0조(유치사절단 및 자문단) ① 위원회는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대외교섭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유치사절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2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치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관계 기관·단체·연구소 임직원 등의 파견이나 그 밖의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유치지원단 파견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직무에 적합한 사람을 파견해야 하며, 소속 공무원의 파견기간 중 파견근무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 또는 유치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12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법인·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제8조에 따른 점검회의, 유치사절단·자문단 및 유치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위원회는 2030년 세계박람회의 유치 국가가 결정되는 날
까지 존속한다.

제3조(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위원회'는 이 영 시행일부터 폐지되는 것
으로 본다.

제4조(유치지원단 인력·예산·자산) 종전의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2030 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사무처의
인력, 예산 및 자산 등은 유치지원단이 승계한다.